

특정통신사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경쟁통신사의 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경쟁에 의한 불법도용이다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39 S. Ct. 68, 63L. Ed. 211 (1918)

1918년 미연방대법원은 뉴스가 준소유물(quasi-property)로서 부당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INS 통신사 (International News Service)는 AP 통신사의 뉴스를 그들의 고객사에 재배포할 목적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어떠한 부정방법도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무단 도용된 뉴스는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AP 통신사는 부당경쟁에 대한 관습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법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1) 뉴스에도 어떠한 소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2) 보도를 목적으로 수집된 뉴스에 소유권이 있다면, 뉴스 수집자로부터 전달받은 첫번째 신문사가 그것을 공표한 직후까지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INS 통신사가 AP 통신사의 통신문이나 제 1 판을 통해 입수한 기사를 상업적 목적에서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의 방법이 상업에서의 부당경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AP 통신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상술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피트니(Pitney) 판사는 다음과 같이 법정의 견해를 밝혔다. 뉴스물의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정보의 성격과 기자가 쓴 기사의 문체상의 특징을 구분하면서 뉴스물의 이원적인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뉴스물도 종종 저작권을 소유하며 관습법상으로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하나의 문예작품과 마찬가지로 기사는 현행법상으로 보더라도 저작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전의 사례에서 순회재판소의 톰프슨(Thompson) 판사는 신문은, 1790년과 1802년의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바 있다.(Clayton v. Stone, 2Paine, 382; 5Fed Cas. No. 2872) 그러나 현행법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작가의 모든 작품과, 특히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도 보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ct of March 4, 1909, C. 320, § 4 & 5, 35 Stat. 1075, 1076 참고). 이 법에 의하면, 신문에 게재된 기고물이 비록 뉴스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스의 요소인, 즉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날그날의 사건을 반영하는 정보는 저자의 창작물은 아니나, 일상적으로 공공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이것은 그날그날의 역사가 된다. 그렇다고 헌법의 기초자들이 혹 역사적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을지도 모르는 자에게 특정시점에서 그러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할 의도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법정은 관습법상으로 볼 때 뉴스에 대한 소유권의 일반적인 문제나 저작권법의 적응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은, 이번 사건은 상업상의 부당경쟁의 문제로 귀속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 법정의 견해로는 이번 사건의 문제는 저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책을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되지 않은 작품의 소유권자에게 부여하는 관습법의 권리와 유사한 일반적인 저작권을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혜택이 이것에 대해서는 유보되어왔다는 사실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법정은 여기서 출판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출판의 편의와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뉴스물의 독특한 가치는 생생하게 전달 되는데 있다. 그리고 뉴스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뉴스에 대한 소유권상의 이익은 그것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 밖에도 부당하게 공표된 뉴스나 계약, 약속 또는 법을 위반해서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룬 뉴스는 일반적인 소유물로 간주될 수 있다. 당 법정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이번 소송의 양당사자가 종사하고 있듯이, 그 날의 사건소식을 세상에 전달하는 업무이다. 그러한 업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독자들의 아침식탁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사소할지 모르나 뉴스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대가와 영업상의 이윤을 보텐 가격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유지된다. 신문 독자들을 위해 수행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그 자체 매우 유익한 것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 이 분야에서 양당사자는 서로 경쟁사이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특권 내지 권리가 다른 쪽 당사자의 그것과 갈등을 야기할 때는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업주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상의 부당경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 해당업무의 성격과 배경을 특히 참작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는 공중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갖는 권리라기 보다는 차라리 그들 간의 권리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당 법정은 양 당사자 어느 쪽이든 뉴스를 공표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 소유권이 공중을 상대로는 계속 존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양 당사자간에도 소유권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뉴스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소유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양당사자에게 공히 뉴스물은 기술과 노력, 자본을 투자해서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상품의 원료와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물을 양당사자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분야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원료로 생각할 때, 당 법정은 이러한 목적에서 그것을 공중을 상대로 한 권리와는 상관없이 준소유권으로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은 고도의 조직과 많은 경비와 기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는 뉴스의 생생함, 정기적인 서비스, 신뢰도, 철저함 그리고 독자의 욕구충족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수집가에게 있어서 그것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또한 뉴스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교환가치를 갖는 것이다. 현사건의 독특한 성격은, 뉴스의 생생함이 통신사가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반면, 바로 뉴스의 배포와 공표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상고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피상고인의 서비스도 일간지를 상대로 하는 매일매일의 서비스다. 외국의 뉴스 대부분은 대서양연안의 이 나라에 도달하며, 특히 뉴욕시에서 수집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시차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뉴스물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전달된다. 그리고 전신, 전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 지구의 자전 즉 시차를 해소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고인이 동부에 소재한 피상고인측 기자들이 수집해서 작성한 통신문(bulletins)이나 제 1 판(early edition)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기란 간단한 문제이며, 그리고 간단한 전신전화료만 지불하면 서부지역의 신문들도 피상고인이 제공하는 뉴스만큼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시차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전신에 의한 뉴스 전달상의 불규칙성 그리고 신문을 인쇄하고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정상적인 시간 등으로 인해 불법 도용된 뉴스가 AP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는 신문사와 거의 동시에, 때로는 더 신속하게 상고인의 독자들 손에 전달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고인이 주장하기를, 피상고인의 허가를 받아 뉴스를 배포할 목적에서 피상고인의 뉴스를 이용한 결과라든지, 피상고인측 기자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뉴스 게시판에 그것을 공고함으로써 일반공중에게 그것을 전달했을 때, 또는 그것을 신문을 통해 전달했을 때에는 피상고인은 더 이상 뉴스물의 이용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고인은, 뉴스가 이처럼 공표되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때와 어떤 목적 혹은 뉴스를 피상고인의 고객 신문사들과의 경쟁에서 이윤을 위해 판매할 목적에서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문구독자도 뉴스에 포함된 지식을 타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서 논리상의 오류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권리, 그리고 그들간의 영업상 경쟁사로서의 권리를 논의하지 않고 공중을 상대로 한 권리와 똑같이 취급하는 데에 있다. 특정신문의 독자가 합법적인 목적에서 피상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전달할 권리는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에서- 이 점은 상고인이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피상고인과 경쟁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상업적 목적에서 전달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다. 피상고인이 뉴스를 수집하는 데에는 방대한 조직과 노력, 기술 그리고 경비가 뒤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뉴스를 상고인이 무단도용해서 자신의 것인 양 판매하는 행위는 타자의 노력의 결과를 가로채려는 행위로서, 또한 그것을 피상고인의 고객사에 대한 경쟁사에 그것을 배포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노력을 무단 도용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구실을 벗겨보면 상고인의 행위는 피상고인이 거둬들인 이윤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뉴스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어떤 경비도 지출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이며, 이는 피상고인의 합법적인 영업방법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고 또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당 법정은 이 사건을 부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불법도용의 문제 외에도, 상고인의 행위에는 위조 및 사취죄의 혐의가 있다. 피상고인의 뉴스 기사를 고쳐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신의 논평을 덧붙였다. 그리고 피상고인의 기사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고인이 피상고인의 뉴스를 불법도용해서 그들의 고객사에 배포한 전반적인 행위는 고객사에 그리고 고객사의 신문독자에게 그들이 전달한 뉴스는 상고인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상고인의 과실을 가중케 하는 것이긴 해도, 과실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과실의 본질은 피상고인이 침해받은 명예이상의 것에 있다. 그러므로, 당 법정은 상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한다. 홈즈(Holmes) 판사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 INS 통신사의 행위는 부당한 경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만약 INS 통신사가 AP 통신사를 기사의 출처로 밝혔더라면 자신은 달리 판결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다수의견에 반대한 브랜다이스 판사(Justice Brandeis)는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건에 대한 법정의 법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지식이나 사실, 사상과 같은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산물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INS 사건자체는 저작권 사건은 아니며, 차라리 불당경쟁에 대한 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상의 도용의 원칙을 근거로 한 사건이다. 이 원칙은 약간 다르긴 해도 여러 주에서 채택되고있다.